

주 시험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이해

자녀에게 장애가 있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lan (IEP))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 및 주 시험을 보는 동안 편의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란 무엇입니까?

편의제공은 평가(시험) 시행 시 학생이 평가를 보는 방법 또는 응답하는 방법 면에 있어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편의는 구조, 즉, 평가로 측정하려는 개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결과 점수의 의미도 바뀌지 않습니다. 편의의 광범위한 범주에는 설정, 일정, 프리젠테이션, 응답이 포함됩니다.

편의제공은 혜택이 아닌 공정성을 제공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이용되었을 때 편의제공은 학생의 장애로 인한 영향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며, 학습 기대치 또는 결과 점수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편의제공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자녀의 장애가 그 동안 배웠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녀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시험 과정 중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지식과 실력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 시험에서 자녀의 편의제공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를 포함한 IEP 팀이 시험 중 자녀에게 편의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EP 회의 중에 목표와 목적이 연간 계획의 일환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IEP 팀이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일상 교육 중에 어떤 종류의 지원 및/또는 편의제공이 필요한가입니다. 시험 중 자녀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은 학년 전반에 걸쳐 주어지는 모든 시험뿐 아니라 주 시험에도 해당됩니다.

필요한 편의제공은 IEP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편의제공 사항에는 무엇이 있고 사용될 방법 및 시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장 시간이 지정된 경우 IEP는 적절한 연장 시간을 정의해야 합니다. 일년 내내 일상 교육 중 시험 제공으로 제공될 모든 편의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의제공은 이용권한을 제공하고 교육 및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들 편의제공은 능력을 보장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에 비해 불공평한 혜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편의제공은 시험 내용을 바꿀 수 없으며, 학생에게 정답에 대한 힌트나 정답을 알려주는 단서나 제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제 자녀에게 504 플랜이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4 조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식별된 학생은 이들의 504 플랜에 포함된 교육 및 시험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편의 제공 내용은 플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편의제공 사항에는 무엇이 있고 사용될 방법 및 시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자녀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시험 편의에 제한이 있습니까?

네. IEP가 있는 학생은 시험 중 편의제공이 허용되지만 주 시험 중에 편의를 이용하는 것에는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각 개별 시험에 대해 결정됩니다. IEP 팀은 일년 동안 치르게 될 주 시험 및 각 시험에서 허용하는 편의제공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편의제공은 교육적 이용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표준화된 평가 또는 주 평가에는 적절하지 않거나 이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의제공의 이용은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편의제공을 이용하는 학생은 보통 가정에서, 커뮤니티 및 나이가 들어 고등 교육 기관 및 직장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편의제공은 교육에는 적절하지만 시험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의 예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이 받는 편의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편의제공은 환경 영역, 시험 프리젠테이션, 학생 응답 또는 시험 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 또는 장소에 대한 편의제공: 예:

- 특수 교육 교실, 소규모 그룹, 개인 또는 공부 열람석, 선호 좌석에서 시험
- 특수 또는 개조된 조명, 조정 가구(예, 슬랜트 보드)

시험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편의제공: 예:

- 저시력 보조기구(예, CCTV, 확대 장비), 큰 활자, 점자
- 서명 지시, 시험 질문 또는 지문(허용 가능한 시험에서 또는 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
- 지시 사항 반복, 명확성을 위해 지시 사항을 설명 또는 쉽게 설명
- 시험 질문 또는 지문을 음독(허용 가능한 시험에서 또는 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
- 색상 덧씌우기, 템플릿 또는 마커 표시, 명암 및 촉각 신호를 이용하여 표시된 자료

학생 응답에 대한 편의제공: 예:

- Braille와 같은 기술, 워드 프로세서 또는 모든 문법 및 맞춤법 검사 장치가 해제된 기타 통신 장치
- 학생이 답을 시험 책자에 표시, 학생이 답을 가리킴, 구두 응답
- 개조된 필기 도구(예, 연필 그립, 직경이 큰 연필)
- 필기자(학생이 말로 또는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 항목에 대한 응답을 줌)
- 기본 기능 계산기 또는 개조된 기본 계산기(특정 자격)

시험 일정에 대한 편의제공: 예:

- 수시로 휴식 관리, 시험을 위한 하루 중 최적의 시간
- 연장 시간(연장된 시간 길이는 IEP에 대해 결정되어야 함)

학생이 각 편의사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를 치르기 전에 교육적 및 평가관련 편의제공을 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학생의 편의제공 사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하여 이들 편의가 아직 효과적인지, 개선이 필요한지 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Georgia 학부모대학(Parent to Parent of Georgia)

770 451-5484 또는 800-229-2038

www.p2pga.org

**Georgia 교육부(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특수교육지원서비스본부
(Divisions f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Supports)**

404 656-3963 또는 800-311-3627로 전화하여 특수교육부(Special Education)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http://www.gadoe.org/ci_exceptional.aspx

기타 연락 방법: 학교 시스템에 관하여 특수교육 책임자(Special Education Director)에게 문의하십시오.